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고려한 유연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며,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개편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남북회담본부로 이관하며,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4명, 7급 3명, 9급 1명)을 통일부로, 1명(5급 1명)을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통일교육원으로 재배정하고, 통일정책실장 밑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며, 통일부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인권인도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며, 정세분석국에 정보공개서비스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사회문화분석팀을 신설하며, 통일정책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통일미래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설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통일기반조성팀을 신설하며, 남북회담본부의 회담2과 및 회담
3과를 통합하여 경제인도회담과로 개편하고, 회담운영연락과를 회담운
영과와 남북연락과로 분리하면서 통일부 및 통일부 소속기관 하부조직
의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30. ~ 4.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제10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를 “제10조제3항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 및 참여소통과를”을 “정책총괄과·전략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참여소통과 및 통일기반조성팀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9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을 “남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제공”을 “등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확산 및 기반조성대책의”를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

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⑫ 통일기반조성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

3. 통일기반조성 관련 분야별 연구 및 조사

4. 통일기반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원

5.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6.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개발·보급

7.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착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북한인권증진과·이산가족과·인도지원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총괄·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
1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감독

12. 인권분야 대북 협력의 추진 및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13. 실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14. 그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3. 북한인권 분야 민관협의체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상호대화 계획 수립 및 운영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집행 및 관리

7.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시스템 운영·점검 및 결산

8.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9.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성

10.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1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3.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및 지원
1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16.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추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의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 체계와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 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의 운영

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남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남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
 15.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조의2를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의2)의 제목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교류협력실장”을 “교류협력국장”으로,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류총괄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남북접경협력과·개발지원협력과 및 교류지원과”를

“교류총괄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4호) 중 “지원”을 “지원·기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제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으로 하며,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과학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재정·금융·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금속·화학·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섬유·식품·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광업·전력·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철도·도로·해운·항만·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건설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물가·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평가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경제통계에 관한 조사·분석
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평가

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7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사회분석과 및 빅데이터팀”을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과·사회문화분석팀·정보공개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세분석총괄과장”을 “사회문화분석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을 “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북한선전자료”를 “북한의 보건·의료·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리전에 관한”을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북한의 사회·문화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인구·노동·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기후변화·자연재해·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세 분석
 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11. 북한 사회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⑧ 정보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2. 북한 정보 공개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 관리
 4. 북한 정보 공개·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
 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6. 북한 실상 관련 공개자료의 생산 및 관리
 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1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관리
 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15. 북한 관련 공개정보 활용 분석 및 평가

제7조제4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사회분석과장”을 “정세분석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를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 산업 실태조사”를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6호) 중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을 “심리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5.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6.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위성영상 활용 북한 동향 조사 및 분석

9.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제4항(중전의 제5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빅데이터팀장”을 “자료관리팀장”으로 하며, 같

은 항 제8호 중 “구축·관리”를 “구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종합·관리
10.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11.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2.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3.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4. 북한 방송·인터넷·선전매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15.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지원

제7조의2(중전의 제6조의2) 제5항제17호 중 “실”을 “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2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22.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2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정치군사회담과·경

제인도회담과 및 회담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담1과장”을 “정치군사회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담2과장”을 “경제인도회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경제분야”를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7호) 중 “경제분야”를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 협력체계 구축 관리
3.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4.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 · 시행
5.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6. 경제 · 사회문화 · 인도 · 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8.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9.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1.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담3과장”을 “회담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 지원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회담운영연락부) ① 회담운영연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회담운영연락부에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운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8.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10.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11. 그 밖의 부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연락사무소 등의 운영 지원
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1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1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제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제19조의3제3항제27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제7장(제20조)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삭제한다.

-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류협력정책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북한인권 기록센터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과장·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연락협력부장”을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회담1과, 회담2과, 회담3과,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를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을 “(통일전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을 “통일전략기획관”으로, “보하되”를 “보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중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을 “통일전략기획관”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통일미래추진단) ① 통일미래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291”을 “309”로 하고, 일반직 계 “287”을 “3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1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을 “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을 “8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31”을 “3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5”를 “17”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을 “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91”을 “309”로 하고, 일반직 계 “287”을 “30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0”을 “1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을 “9”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를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9”를 “8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10”으로 하고, 행정주사 “28”을 “30”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5”를 “17”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7”을 “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3”을 “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71”을 각각 “72”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4”

를 “3”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9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9”를 “7”로 하고,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5 다음에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2”를 신설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7의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9”를 각각 “7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7”을 “58”로 한다.

별표 9 1) 조직란 1) 중 “교류협력실”을 “인권인도실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2024년 9월 30일까지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2) 조직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별표 9 2)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3) 조직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권인도실 북한인권증진과

별표 9 3)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9월 30일”을 “2026년 3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	----	----------------

별표 11 중 “(제25조제4항 관련)”을 “(제25조 및 제25조의2 관련)”으로 하고,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5조 및 제25조의2 관련) 다음에 “통일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를 신설하며, “통일미래전략기획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를 삭제하고, 총계 “9”를 “1”로 하며,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고, 일반직 계 “9”를 “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통일미래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8”를 신설한다.

별표 12를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일기반조성팀은 2026년 4월 10일까지, 사회문화분석팀은 2026년 4월 10일까지 각각 존속하며, 기존 빅데이터팀을 자료관리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25년 4월 1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일기반조성팀장·사회문화분석팀장 및 자료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일기반조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책협력과장이,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은 경제분석과장이, 자료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공개서비스
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권인도실장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인권인도실 북한인권증진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0명	2026년 3월 31일까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 및 제25조의2 관련)

통일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통일미래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1

[별표 12] <신 설>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단서 관련)

총 계	1
일반직 계	1
시설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정책실) ①·② (생략)	제6조(통일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제10조 제3항제9호,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 ----- ----- -----.
④ 통일정책실에 <u>정책총괄과 · 정책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협력과 · 정책협력과 및 참여소통과를 둔다.</u>	④ ----- <u>정책총괄과 · 전략기획과 · 평화정책과 · 국제협력과 · 정책협력과 · 참여소통과 및 통일기반조성팀을 -----</u> -----.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u>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⑤ ----- <u>서기관</u> 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u>정책기획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전략기획과</u> 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남북공동체 기반 조성</u>	<u><삭 제></u>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⑧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⑧ -----

분장한다.

1. ~ 8. (생략)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10. 삭제

<신설>

<신설>

<신설>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제공

8.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14. 남북 -----
--

1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1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1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⑨ -----
-----.

1. ~ 6. (현행과 같음)

7. -----
----- 등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통일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대책의 수립·시행

5. ~ 10. (생략)

⑪ (생략)

<신설>

⑩ -----
-----.

1. ~ 3. (현행과 같음)

4. ----- 확산을 위한 정책 -

5. ~ 10.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⑫ 통일기반조성팀장은 다음사
항을 분장한다.

1.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개정

3. 통일기반조성 관련 분야별
연구 및 조사

4. 통일기반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지원

5.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6.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
획·개발·보급

7.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
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신 설>

제6조의3(인권인도실) 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북한인권증진과·이산가족과·인도지원과·정착지원과·

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
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
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
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총괄·
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
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
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
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
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와의 협력
10.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

외 홍보

1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 ·

감독

12. 인권분야 대북 협력의 추진

및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합 · 조정

13. 실내 예산 · 국회 · 홍보 · 서

무 · 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14. 그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

립 및 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

리, 협력 및 활동 지원

3. 북한인권 분야 민관협의체

운영

4. 북한인권 관련 상호대화 계

획 수립 및 운영

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집행 및 관리

7.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시스템 운영 · 점검 및 결
산

8.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9.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
성

10.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 · 관
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 · 조정 및 사후관
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1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 · 반입 승인

19. 납북자 · 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 단체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 · 개정 · 폐지

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2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 · 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 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
금 계획 수립 및 지원

1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
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
련

16.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
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
조사·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
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
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
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
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 · 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
소 운영의 지도 · 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
된 민간단체의 지도 · 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
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
템 관리 · 운영

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 ·
운영

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 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 · 계획의 수립 · 추
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
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
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
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
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의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
계비·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지원
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
의 보호
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
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
원 및 거주불명 조사
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
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
역주민 소통·교류 지원

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
영

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
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
인·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교류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교류협력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

-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
- 15.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의2(교류협력국) ① 교류협력국장-----

 ----- 나등급-----
 -----.

<삭 제>

<삭 제>

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과 · 남북접경협력과 · 개발지원협력과 및 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및 조정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④ -----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

-----.

⑤ -----
-----.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 · 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9. -----
----- 지원 · 기획 -----
--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 · 단체의 지도 · 육성 및 관리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⑦ (생략)

⑧ 삭제

⑨ 남북접경협력과장은 다음 사

1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7. ----- 국 -----

⑥ -----
-----.

1. ~ 19. (현행과 같음)

2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정책의 수립·시행

22.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2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⑦ (현행과 같음)

<삭제>

항을 분장한다.

1.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사후관리
2.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3.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민간단체 등의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 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
과의 협조

9.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
용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
계 유지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
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
용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
축

⑩ (생 략)

⑪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
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출
입 관리의 지원 총괄

2.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3.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
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4.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
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 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5.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6.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7.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8.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10.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11.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제7조(정세분석국) ① (생략)

<신설>

제7조(정세분석국)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 · 정치군사분석과 · 경제사회분석과 및 빅데이터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평가의 종합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 · 생산
3. 북한의 대남전략 · 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 · 평가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 · 평가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평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으로 하며,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 정세분석총괄과 · 정치군사분석과 · 경제분석과 · 사회문화분석팀 · 정보공개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
-----.

⑦ 사회문화분석팀장-----
-----.

1. 북한의 사회 · 문화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인구 · 노동 · 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 · 평가
3. ---- 문화 · 관광 · 예술 · 언론 · 출판 · 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
4. 북한의 보건 · 의료 · 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

5.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및 사회복지 등

	<u>관련 분야의 -----</u> --
6. <u>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u>	6. <u>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u>
7. <u>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u>	7. <u>북한의 기후변화·자연재해·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u>
8. <u>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u>	8. <u>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u>
9. <u>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u>	9. <u>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u>
<u><신 설></u>	10. <u>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u>
11. <u>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u>	11. <u>북한 사회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u>
13. <u>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u>	<u><삭 제></u>
15. 「<u>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u>」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u><삭 제></u>
16. <u>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u>	<u><삭 제></u>

<u>관계 기관과의 협조</u> <u>17.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u> <u>의 간행 및 통합 관리</u> <u>1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u> <u>19.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u> <u>및 시행</u> <u>20.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u> <u>이스 구축</u> <u>21. 북한공개정보센터의 운영</u> <u>및 관리</u> <u>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u> <u>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u><신 설></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⑧ 정보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u> <u>사항을 분장한다.</u> <u>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u> <u>및 시행</u> <u>2. 북한 정보 공개 대국민 서비</u> <u>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u> <u>정 관리</u> <u>4. 북한 정보 공개·활용 관련</u> <u>관계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u> <u>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기획</u> <u>및 제작</u> <u>6. 북한 실상 관련 공개자료의</u> <u>생산 및 관리</u>
--	--

④ (생략)
<신설>

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1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관리
 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15. 북한 관련 공개정보 활용 분석 및 평가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과학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재정·금융·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3. 북한의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4. 북한의 금속·화학·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의 섬유·식품·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6. 북한의 광업·전력·재생에
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철도·도로·해운·
항만·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건설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8.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
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

9.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
·물가·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평가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
발 및 경제총량·경제통계에

⑤ <u>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u> 2. <u>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u> 3. <u>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u> 4. <u>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u> 5. <u>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제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u>	<u>관한 조사·분석</u> 11. <u>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평가</u> 12. <u>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평가</u> 13. <u>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u> ④ <u>정세분석총괄과장</u>----- -----. 1. <u>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u> 2. ----- <u>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u> ----- -- 3. <u>북한선전자료의 조사</u> ----- ----- -- <u><삭 제></u> <u><삭 제></u>
--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 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 동향 분석·평가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5.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6.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7.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위성영상 활용 북한 동향 조사 및 분석

9.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4. ---- 심리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신 설>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⑥ 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
반 대민서비스의 구축·관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⑨ 자료관리팀장-----
-----.

1. ~ 7. (현행과 같음)

8. -----
----- 구축 및 지원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의 수집·종합·관리

10.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11.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2.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13.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14. 북한 방송·인터넷·선전매
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
축

15.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
의 지원

제8조(인도협력국) ① 인도협력국

<삭 제>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 · 북한인권과 · 이산가족과 · 정착지원과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및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도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승인 시 협조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 · 조정
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

장기 계획 수립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후 관리
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11.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대북 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지원

및 관리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
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
· 조정

15.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
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④ 북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총괄·
조정

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입안 또는 기획

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
의 수립 지원

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
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
영

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
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감독

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

회와의 협조

10. 북한인권 관련 단체 관리

11. 북한인권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전략 개발 및 시행

12.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

감독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입안 또는 기획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4.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

리 및 운영 지원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

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

리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 조정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
향분석 및 통계 유지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
영·관리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
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1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
북정책의 총괄·조정
1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
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
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
사 및 동향분석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
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
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

단체 지원

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 · 개정 · 폐지

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

원

2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

영 지원

⑥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 종합 및 조정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

조사 · 연구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

획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

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

련 대책기구 운영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 · 의료 보호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
소 운영의 지도·감독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
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
분석 및 통계유지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
템 관리·운영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
의 보호
15.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 17.
18.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19.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 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 ⑦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

영

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

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

인·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

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

매·조달

15.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⑧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추
진

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
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
영

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
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
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의 관리

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
계비·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지원
에 관한 사항

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
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1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
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
역주민 소통·교류 지원

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
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
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1조(회담기획부) ① (생 략)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
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
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
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삭 제>

제11조(회담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치군사회담
과·경제인도회담과 및 회담지
원과-----
-----.
③ 정치군사회담과장-----
-----.

1. ~ 4. (생략)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6. ~ 14. (생략)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신설>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 ~ 4. (현행과 같음)

5.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6. ~ 14. (현행과 같음)

④ 경제인도회담과장-----
-----.

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 협력체계 구축 관리

3.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4.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7.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

5.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6.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 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신 설>

<신 설>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2.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3. 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관리

10.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

8.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9.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경제·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⑤ 회담지원과장-----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u>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u> 4. <u>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u> 5. <u>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u> 6. <u>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u> 7. <u>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u> 8. <u>사회문화·인도·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u> <u>제12조(회담운영부) ① 회담운영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u>	<u>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u> <u>5.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u> <u>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 지원</u>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	---

한다.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회담운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 계획의 수립·시행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12. 남북 간 관문점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13. 판문점지역 및 기타 남북회

담·교류행사 관련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14. 판문점 남북직통전화의 운

용

15.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16.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17.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1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

신망 등의 관리·운용

1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

안 통제

2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

사지원

2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

관 협조

2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⑤ 삭제

<신 설>

제12조의2(회담운영연락부) ① 회

담운영연락부장은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회담운영연락부에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회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2.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운영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

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8.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공동행
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
· 집행 및 결산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
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발간

10.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
문 준비 및 지원

11. 그 밖의 부내 다른과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
한 사항의 종합·조정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
업무의 수행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
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
의 운영

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
한 남북한 간 합의에 의한 연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
 ② (생략)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6. (생략)
<신설>

27. (생략)
 ④ 삭제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락사무소 등의 운영 지원
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영
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10.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1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1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1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6. (현행과 같음)
28. 경의선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29. (현행 제27호와 같음)
 ⑤ -----
 -----.

1. ~ 13. (생략)

<신설>

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제20조(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이하 제4항 및 제6항에서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교류부 및 연락협력부를 두되, 운영교류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연락협력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연락협력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락협력부장은 3급 또는 4급에 상응하는 국

1. ~ 13. (현행과 같음)

14. 동해선 철도·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견학 등 지원

<삭제>

<삭제>

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④ 운영교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

2. 북한 측 사무소와의 연락체계 유지 및 남북한 사무소장회의 운영

3.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 정착 문제의 협의

4. 남북한 당국 간 정치·군사 분야에 대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

5. 삭제

6.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등 분야의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

7.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의 및 합의사항 이행 지원

8.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관한 협의·지원

9.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 지원

10. 각 분야별 공동행사 및 민관

합동행사의 협의 · 지원

11.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

하는 제3국 외교사절 및 국제
기구 직원에 대한 지원

12. 남북한 간 대표단 교환 및

특별 행사 등의 협의

13.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14.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

· 보안 및 문서관리

15. 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 ·

집행 및 회계 · 결산

16. 시설 ·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7.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과 관련되는 통신 · 전산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8.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 · 관리

19.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⑥ 연락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당국 간 정치·군사 분야의 연락에 관한 사항
2. 남북한 당국 간 경제, 사회, 문화예술, 체육, 보건 및 교육 분야 등의 연락에 관한 사항
3. 남북한 당국 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락에 관한 사항
4. 각 분야별 회담에 관한 연락·협의 지원
5.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한 통신, 보안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북한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은 별표 6과 같으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
원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2
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할 수 있다.

⑥ 별표 6에 따라 남북공동연락
사무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
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
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
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1
명(6급 1명)은 산림청 소속 공
무원으로 충원하며, 3명(4급 또

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
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
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
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는 5급 1명, 5급 2명)에 대해서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소
속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⑧ (생략)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5와 같다.

⑩ (생략)

<작 제>

⑧ (현행과 같음)

⑨ _____

_____.

<단서>

삭제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교류협력정책관, 남북회담본부 상근 회담대표,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과장·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연락협력부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회담1과, 회담2과, 회담3과, 회담지원과 및 회담운영연락과로 한다.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국립 통일교육원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홍보담당관·개발지원협력과장 -----

-----.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정치군사 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 지원과,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

제25조(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①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기획운영팀을 두며,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 통일 미래전략·구상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이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의제 개발 및 대북 협의 기획·지원
4. 통일 미래전략·구상 추진에 대한 평가·점검
5. 통일 미래전략·구상 분야별 연구 및 조사
6. 통일 미래전략·구상 자문기

략과-----.

제25조(통일전략기획관) ① 통일

전략기획관-----

----- 보하며-----

-----.

<삭 제>

<삭 제>

구의 운영 및 지원

7.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관계 부처 · 기관 및 국내외
협력

8. 통일 미래전략 · 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9. 통일 미래전략·구상 관련

④ 통일미래전략기획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신 설>

<신 설>

② 통일전략기획관-----

-----.

제25조의2(통일미래추진단) ① 통
일미래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1	309	+18
일반직 계	287	305	+18
고위공무원단	10	1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9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	30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	80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10	+2
·	·	·	

•	•	•	
행정주사	<u>31</u>	<u>33</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5</u>	<u>17</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7</u>	<u>10</u>	+3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91	309	+18
일반직 계	287	305	+18
고위공무원단	10	1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9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	30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9	83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10	+2

행정주사	<u>28</u>	<u>30</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5</u>	<u>17</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7</u>	<u>10</u>	+3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1	72	+1
일반직 계	71	72	+1
고위공무원단	4	3	-1
·	·	·	
·	·	·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u>	<u><신 설></u>	<u>1</u>	+1
<u>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행정주사	9	7	-2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u>	<u><신 설></u>	<u>1</u>	+1
<u>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	·	·	
·	·	·	

행정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u>4</u>	<u>3</u>	-1
•		•	•	
•		•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송 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신 설>	<u>2</u>	+2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6]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9</u>		<u>70</u>	+1	
일반직	계		<u>69</u>		<u>7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u>		<u>58</u>	+1	
	.		.		.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 및 제25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5조제 4항 관련)	(제25조 및 제25 조의2 관 련)	
통일 전략기 획관(존속기 한: 2023년 12월 31일)	<신 설>	통일전 략기 획관 (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 1일)	+ 통일전 략기 획관 (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1일)
통일미 래 전략기 획단(존속기 한: 2023년 12월 31일)	통일미 래 전략기 획 단(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 1일)	<삭 제>	- 통일미 래 전략기 획단(존 속기 한: 2023년 1 2월 31 일)
총계	9	1	-8
일반직 계	<신 설>	1	+1
.	.	.	

<u>통 일 미 래 추 진 단 (존 속 기 한 :</u> <u>2023년 12월 31일)</u>	<u><신 설></u>	<u>8</u>	+8
일반직 계	<u>9</u>	<u>8</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1	309	+18
일반직 계	287	305	+18
고위공무원단	10	1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9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	30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	80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10	+2
·	·	·	

•	•	•	
행정주사	<u>31</u>	<u>33</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5</u>	<u>17</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7</u>	<u>10</u>	+3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91	309	+18
일반직 계	287	305	+18
고위공무원단	10	12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9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9	30	+1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9	83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10	+2

행정주사	<u>28</u>	<u>30</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5</u>	<u>17</u>	+2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 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u>7</u>	<u>10</u>	+3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1	72	+1
일반직 계	71	72	+1
고위공무원단	4	3	-1
·	·	·	
·	·	·	
<u>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u>	<u><신 설></u>	<u>1</u>	+1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u>	<u><신 설></u>	<u>1</u>	+1
<u>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행정주사	9	7	-2
·	·	·	
·	·	·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u>	<u><신 설></u>	<u>1</u>	+1
<u>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	·	·	
·	·	·	

행정서기보 운전서기보	또는	<u>4</u>	<u>3</u>	-1
•		•	•	
•		•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송 통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신 설>	<u>2</u>	+2
•		•	•	
•		•	•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6]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69</u>		<u>70</u>	+1	
일반직 계			<u>69</u>		<u>70</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7</u>		<u>58</u>	+1	
	.		.		.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 및 제25조의2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5조제 4항 관련)	(제25조 및 제25 조의2 관 련)	
통일 전략기 획관(존속기 한: 2023년 12월 31일)	<신 설>	통일전 략기 획관 (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 1일)	+ 통일전 략기 획관 (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1일)
통일미 래 전략기 획단(존속기 한: 2023년 12월 31일)	통일미 래 전략기 획 단(존속기 한: 2023 년 12월 3 1일)	<삭 제>	- 통일미 래 전략기 획단(존 속기 한: 2023년 1 2월 31 일)
총계	9	1	-8
일반직 계	<신 설>	1	+1
.	.	.	

<u>통 일 미 래 추 진 단 (존 속 기 한 :</u> <u>2023년 12월 31일)</u>	<u><신 설></u>	<u>8</u>	+8
일반직 계	<u>9</u>	<u>8</u>	-1
·	·	·	
·	·	·	